**<졸업고사 면제 세부사항>**

-졸업고사 면제 해당 학생은 졸업고사에 응시하지 않아도 되나, 면제신청서는 제출해야 함.

-면제기준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과정 | 전공학점 이수기준 | 전공평점평균 |
| 단일전공(전공심화) | 60학점 이상 이수 | 4.0이상 |
| 다전공, 연계전공, 융합전공 | 36학점 이상 이수 | 4.0이상 |
| 편입 | 50학점 이상 이수 | 4.0이상 |
| 외국인유학생 | GPA 2.0 이상  |

1) 전공학점 이수기준 충족 후 전공평점평균 4.0 이상일 경우(7학기 이상 이수자)

\*부전공은 단일전공 기준으로 적용함.

\*졸업고사 직전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함.

2) 기준자격증 및 기준자격증에 준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

|  |  |
| --- | --- |
| 자격증 | CPA(1차) AICPA(최종) 세무사(1차) 노무사(1차) 관세사(1차) 자산설계전문가[CEP](1차) 국제공인재무설계사[CFP](최종) 국제재무위험관리사[FRM](최종) 생산재고관리사[CPIM](최종) 감정평가사(1차) |

3) 취업률이 인정되는 (건강보험 가입 등) 기업, 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(인턴 제외)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면제 증빙서류종류 | 취업(인턴X) | 1) 재직증명서(입사예정증명서, 합격확인서) 2)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: 가입자 구분\_직장 가입자 |
| 창업 | 1)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2) 창업 후 1년동안 총 660만원 이상의 매출 증빙자료 3) 지도교수의 추천서 |
| 자격증 | 1) 자격증 합격 통지서 |
| 전공과목 GPA | 1) 전공 과목 GPA 계산표(직전학기까지의 성적, PF 제외) |

※ 공무원 시험의 경우 합격증 제출로 면제 가능